

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3월 24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균

국 무 위 원

추 미 애

법무부장관

● **법률 제17089호**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천만원”을 “7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3조의3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
- 2.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
- 3.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(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)

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93조의3제2항”을 “제93조의3제1호·제3호”로 한다.

제99조제1항 중 “제93조의3제2항”을 “제93조의3제1호·제3호”로 한다.

제9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93조의3제2항제1호”를 “제93조의3제1호”로 한다.

제10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과태료 부담능력,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할 것인바,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상향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,

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·권유하는 경

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,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만 벌하도록 하는 등 양벌규정을 조정하며,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과태료 부담능력,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